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80호

2018. 8. 30. (목)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969호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 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수목내역

구분	지정번호	위 치	수 종	주수	수령(년)	규 격		토지 소유자	비고
						수고(m)	흉고둘레(m)		
지정해제	서23-4	강남구 삼성동 172-56 외 1	느티나무	1	400	11	4.2	이재효	

- 2. 지정해제 사유 : 수목 고사로 인해 지정 목적 상실
- 3. 지정해제 예정일 : 2018. 9. 13.
-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 5.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조경과(☎ 2133-2124),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8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976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2018~2022)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장